

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

의안 번호	5-14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

제 출 자 : 김정자 의원 외 5인

□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2007. 5. 11.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규칙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”를 “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” 로 함.(안 제1조)

나. “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5조제1항” 을 “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3조제1항” 으로 함.(안 제14조제2항)

다. “법 제71조”를 “법 제79조”로 함.(안 제70조제1항)

라. “법 제78조”를 “법 제86조”로 하고, “법 제75조”를 “법 제83조”로 함.(안 제82조제1항 및 제3항)

동두천시의회규칙 제 호

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”로 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5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3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70조제1항 중 “법 제71조”를 “법 제79조”로 한다.

제82조제1항 중 “법 제78조”를 “법 제86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75조”를 “법 제8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
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의 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71조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 (생략)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5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휴회를 선포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63조제1항 ----- -----</p>
<p>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의장은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 <개정 2006. 9. 8> ② (생략)</p>	<p>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----- 법 제79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
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63조(의사정족수) ①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한다.

②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(散會)를 선포한다.

제71조(회의규칙)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.

제79조(의원의 자격심사) ①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피심의원(被審議員)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,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.

제83조(모욕 등 발언의 금지) ①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86조(징계의 사유)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.